

2024년 장기요양급여 안내

▶ 본인부담금(2024.01.01. 기준)

구분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 중증(장기요양1.2등급)재가 수급자 이용한도액 인상 8시간 방문요양 이용가능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조정

*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2024년 10월~) 일정조건(입소시설 근무 5년이상, 승급교육 40시간 이수자)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

*보수교육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2년간 1회) 지원

▶ 재가급여(2024.01.01. 기준)

가.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	월 한도액	1일 가능시간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40% 감경대상자 (9%)	60% 감경대상자 (6%)
1등급	2,069,900	최대 - 4시간, 31일	310,485	186,291	124,194
2등급	1,869,600	최대 - 4시간, 28일	280,440	168,264	112,176
3등급	1,455,800	최대 - 3시간, 26.8일	218,370	131,022	87,348
4등급	1,341,800	최대 - 3시간, 24.7일	201,270	120,762	80,508
5등급	1,151,600	최소2, 최대 3시간, 21.2일	172,740	103,644	69,096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나. 방문요양 급여비용(2024.01.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4등급 계산>

급여제공시간	시간 * 월 횟수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1일*3시간	54,320*20회	162,960	97,776	65,184
	54,320*22회	181,590	108,954	72,636
	54,320*24회	200,310	120,186	80,124